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6. 18.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99호
- 나. 제 출 자 : 백 승 권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0. 5. 29.(금)
- 라. 회부일자 : 2020. 5. 29.(금)

2. 제안이유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에서 외국인 학생은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정의(안 제2조)
- 나. 교복지원금의 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헌법」 제31조, 제117조,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0. 5. 29. ~ 2020. 6. 4. (의견제출 1건)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본 개정조례안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은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경우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2020. 5. 29. 백승권의원이 발의하였음.

나. 주요내용

○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 하고자 2018년 제213회 임시회에서 발의되어 제정하였으나, 교복지원금 지원대상이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만 지원되고 있음.

안제3조에 외국인 등록지가 금천구로 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도 지원하도록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복지원을 하고자 함.

현재 우리 구의 중고 신입생 중 외국인 학생현황은 표1과 같음

표1 중·고생 신입생 중 외국인학생 현황

구 분	개소수	신입생수	관 내		관 외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계	16	2,831	2,338	46	442	5
중 학교	10	1,493	1,366	35	92	
고등학교	6	1,338	972	11	350	5

현재 우리 구에 외국인 등록을 둔 1학년생이 표1과 같이 중학교 10개교 35명, 고등학교 6개교 11명으로 대상 학생은 46명임.

또한 현재 전국에 교복지원 조례가 표2와 같이 123개가 있으며 이중 100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23개 18.69%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전입생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표2 교복지원 지급 기준 현황

계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 및 전입생 기준	주민등록 기준	비 고
123	23	100	

※ 관내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 및 전입생을 기준으로 지급

: 인천광역시, 부천시, 강릉시, 경상남도, 의정부시, 이천시, 대전광역시, 논산시 등

우리 구는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교복을 입지 않는 문일중학교도 제외되어 있어 안제2조에서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 복 등을 말한다.”로 규정하여 지원하고자 함.

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¹⁾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²⁾(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제5호가목과 라목에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2항제5호가목과 라목 내용은 붙임 9쪽 참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범위에 해당되고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단체위임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교복 지원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는 수익적·복지적 사무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다만,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2조제2항 신설 조항에서 “교복”의 개념을 제복이 아닌 단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어 이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첨부 1. 의견제시 사례 1부.
2. 관련법령 1부.

붙임 1

의견제시 사례(의견12-0154)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복비 지급 기준 관련(「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의견12-0154, 2012. 6. 18., 경기도 안산시]

【질의요지】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은 매년 다자녀 가정의 자녀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에게 교복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입학연도를 경과하여 그 다음 해에 교복비 지급을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의견】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교복비는 입학하는 당해 연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이 건 질의는 고등학교 입학 연도는 이전 연도이지만 교복비 지원 신청일 현재 아직 1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다자녀 가정 조례” 라고 함)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자녀 가정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복비는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에게 지원하고 있고, 시장이 ‘매년’ 학자금 등(교복비 지급 포함)의 지급규모,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 1월에 공고된 ‘다자녀가정 교복비 및 학자금 지원 공고’에 따르면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3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인 자녀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입학예정’인 자로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고, 2011년 1월에 공고된 ‘안산시 다자녀가정 교복비 지급 공고’에서는 신청기간을 2011. 1. 19. - 2011. 2. 18. 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다자녀 가정 조례에 따른 교복비는 입학하는 당해 연도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정 조례에 따른 지원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그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는 수익적·복지적 사무이므로, 다자녀 가정 지원의 당초 목적과 취지 및 시의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운영 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